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수 도 권 행 정 협 의 회 규 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수도권행정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①협의회의 위원은 제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협의회의 회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 유고시에는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주택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에 관한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6. 한강의 개발·관리 및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9. 시·도간 연결 버스노선의 신설·연장 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
10. 주요 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변경·확장 및 포장에 관한 사항
11.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2. 수도권 광역 상·하수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공동감시·단속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14. 자원 및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행정정보 및 기술의 교환
16. 기타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1호내지 12호 각호의 사항중 인접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계획확정 이전에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는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협의안건을 제출받은 회장은 협의안건을 실무협의회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전검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⑤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미합의 사항의 조정요청) 관계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협의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합의 및 조정의 효력) 관계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5인을 둔다.

②간사는 서울특별시의 광역행정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관 또는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각 시·도의 광역행정업무 담당사무관 각 1인으로 한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각 위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 ①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가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협의안전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담당실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련 국·과장이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 기획업무담당실장이 되며, 간사와 서기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가 겸직한다.

④실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협의회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위원장은 협의안전에 대한 검토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14조(회계)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년 첫 번째 회의시 간사가 보고하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규약변경) 이 규약은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약의 해석 등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新·舊條文對比表

현행	개정안
<p>第1條(目的) 서울特別市를 中心으로한 首都圈關係 市·道單位 地方自治團體 間에 關聯된 行政事務의 一部를 共同으로 協議 處理하므로서 圈域內의 균형있는 發展과 廣域行政의 效率的인 推進을 圖謀하기 爲하여 首都圈行政 協議會(以下 “協議會”라 한다)를 設置 運營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 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第2條(事務所位置) (생략)</p>	<p>제2조(사무소위치) (현행과 같음)</p>
<p>第3條(構成) 協議會는 首都圈行政關聯 地方自治團體인 서울特別市, 仁川直轄市, 京畿道, 江原道, 忠淸北道로 構成한다.</p>	<p>제3조(구성) 인천광역시</p>
<p>第4條(組織) ①協議會는 會長 1人과 常任委員 및 非常任委員으로 構成한다. ②會長은 서울特別市長으로 하고 有故時에는 서울特別市 副市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常任委員은 仁川直轄市長과 京畿道 知事로 非常任委員은 江原道知事와 忠淸北道知事로 하되 부득이한 事由 發生時 副市長 또는 副知事が 代理委員으로 參席할수 있으며 討議와 表決 權을 갖는다.</p>	<p>제4조(조직) ①협의회의 위원은 제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협의회의 회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현행	개정안
<p>④會長은 協議會를 代表하며 會議를 召集하고 協議會의 事務를 總括한다</p> <p>第5條(機能) ①協議會는 다음 事項을 協議·決定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運營에 關한 事項 4. 隣接地域과 關聯되는 住宅團地 및 工業團地 等の 造成事業에 關한事項 5. 行政區域 境界管理 等の 事務의 協議·調整 또는 共同處理에 關한 事項 6. (생략) 7. 資源의 開發·利用·調査에 關한 事項 8. ~ 9. (생략) 10. 主要 連結道路 等 道路網의 新設, 變更, 擴張, 鋪裝 等に 關한 事項 11. ~ 12. (생략) 13. 開發制限 區域內에서의 共同監視, 團束 其他 이와 關聯된 事項 14. (생략) 	<p>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p> <p>제5조(기능) ①... 각호의 사항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현행과 같음) 3. 설치·관리 및 운영 ... 4. 주택 ... 5. 등에 관한 ... 6. (현행과 같음) 7. 이용 및 조사 ... 8.~9. (현행과 같음) 10. 확장 및 포장에 ... 11.~12. (현행과 같음) 13. 단속 및 기타 ... 14. (현행과 같음)

현 형	개 정 안
<p>15.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資料, 情報, 技術의 交換</p> <p>16. 其他 廣域開發 및 廣域行政 遂行 上 必要한 事項</p> <p>②(생략)</p> <p><u>第6條 (協議方法) ①委員은 協議案件을 會長에게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하며 會長은 實務協議會의 事前檢討를 받아 30日以內에 會議를 召集한다.</u></p> <p><u>②協議案件의 合意는 參席委員 全員의 贊成으로 한다.</u></p> <p><u>第7條(會議) ①協議會의 會議는 定期會議, 臨時會議로 區分한다.</u></p> <p><u>②定期會議는 年2回 하되 2~3月과 8~9月中에 會長이 召集한다.</u></p> <p><u>③臨時會議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召集하되 會長은 委員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한 會議를 召集하여야 한다.</u></p>	<p>15. 행정정보 및</p> <p>16. 광역행정</p> <p>②(현행과 같음.)</p> <p>(삭제) * 제6조로 이기</p> <p><u>제6조(회의) ①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는 수시회의로 구분한다.</u></p> <p><u>②협의회에 안건을 삼점하고자 하는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③제2항에 의하여 협의안건을 제출받은 회장은 협의안건을 실무협의회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전검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④會長은 會議가 있을 때마다 協議案件을 準備하여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미리 配布하여야 한다.</p>	<p>④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p>	<p>⑤會長은 協議會 開催後 14日以內에 協議會 開催結果를 內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p>	<p>⑤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p>	
<p>第8條(事務處理) ①協議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幹事1人和 書記3人을 둔다.</p>	<p>〈삭제〉 *제9조로 이기</p>	<p>②幹事は 서울特別市の 企劃管理室 擔當官으로 하고 書記는 各常任委員이 指定하는 企劃管理室 所屬係長 1人으로 한다.</p>		
<p>第9條(會議錄 作成) 協議會의 幹事は 會議錄을 作成 管理하여야 한다.</p>	<p>〈삭제〉 *제9조로 이기</p>	<p>第10條(資料提出要求等) 協議會는 事務 處理를 爲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關係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資料의 提出, 意見의 開陳等 協助를 要求할 수 있으며 其他 必要한 경우에는 關係機關 公務員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p>		
<p>第10條(資料提出要求等) 協議會는 事務 處理를 爲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關係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資料의 提出, 意見의 開陳等 協助를 要求할 수 있으며 其他 必要한 경우에는 關係機關 公務員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p>	<p>〈삭제〉 *제10조로 이기</p>	<p>第11條(會議의 進行) 協議會의 會議는 協議會의 長의 主持로 하며 會議의 進行에 關係한 事項은 協議會의 長의 裁量에 任하여 決定한다.</p>		

천	행	개	정	안
<p>第11條(未合意事項의 調整要請) 會長은 協議會에서 2回以上 協議해도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內務部長官에게 이에 對한 調整을 要請하여야 한다.</p>	<p>제7조(미합의 사항의 조정요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협의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第12條(協議 및 事務處理의 效力) 關係 地方自治團體는 協議會가 決定한 事項이나 內務部長官이 調整한 境遇에는 이에 따라 그 事務를 處理하여야 한다.</p>	<p>제8조(합의 및 조정의 효력)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9조(간사 등)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5인을 둔다.</p> <p>②간사는 서울특별시의 광역행정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관 또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각 시·도의 광역행정업무 담당사무관 각 1인으로 한다.</p> <p>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각 위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p> <p>②협의회는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원	행	개	정	안
<p>第13條(諮問委員) ①協議會는 協議事項에 關한 諮問에 應하게 하기 爲하여 諮問委員을 들 수 있다.</p> <p>②諮問委員은 國家의 特別行政機關의 長, 關聯公共團體의 長 및 關係 專門家中에서 協議會의 承認을 얻어 會長이 委囑한다.</p> <p>③公務員이 아닌 諮問委員에 對하여는 協議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p>	<p>제11조(자문위원) ①..... <u>자문을 구하기</u>..... </p> <p>②.....<u>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u>..... </p> <p>③..... <u>예산의 범위안에서</u> <u>수당·여비 등 실비를</u>.....</p>			
<p>第14條(實務協議會) ①協議會의 效率的 運營을 爲하여 上程案件에 對한 實務的인 事前檢討가 이루어지도록 實務協議會를 構成 運營한다.</p> <p>②實務協議會 構成은 地方自治團體의 企劃管理室長을 委員으로 構成하되 上程案件에 따라 關係局 課長이 陪席 參與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p> <p>③實務協議會 委員長은 서울特別市の 企劃管理室長이 되며 幹事 및 書記는 第8條 第1項, 第2項을 準用한다.</p>	<p>제12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爲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p> <p>②실무협의회는 위원이 속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획업무담당실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안건관련 국·과장이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p> <p>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 기획업무담당실장이 되며, 각사와 서기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가 겸직한다.</p>			

현행	개정안
<p>④會議는 實務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實務委員의 要求가 있는 때에는 召集하여야 한다.</p>	<p>④실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협의회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p>
<p>⑤實務委員長은 協議案件의 實務檢討 意見書를 本 協議會 會長에게 제출하고 本 協議會 開催時 그 內容을 報告하여야 한다.</p>	<p>⑤위원장은 협의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第15條(經費負擔) 協議會 및 實務協議會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會議를 開催하는 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特別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協議會에서 따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負擔할 수 있다.</p>	<p>제13조(경비부담)</p>
<p>第16條(會計) (생략)</p>	<p>제14조(회계) (현행과 같음)</p>
<p>第17條(規約改正) 이 規約의 改正은 委員全員の 贊成으로 한다.</p>	<p>제15조(규약변경) 이 규약은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p>
<p>第18條(補則) 協議會가 運營上 必要한 其他事項은 協議會에서 따로 定한다.</p>	<p>제16조(운영규정)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또는 이 규약의 해석 등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p>